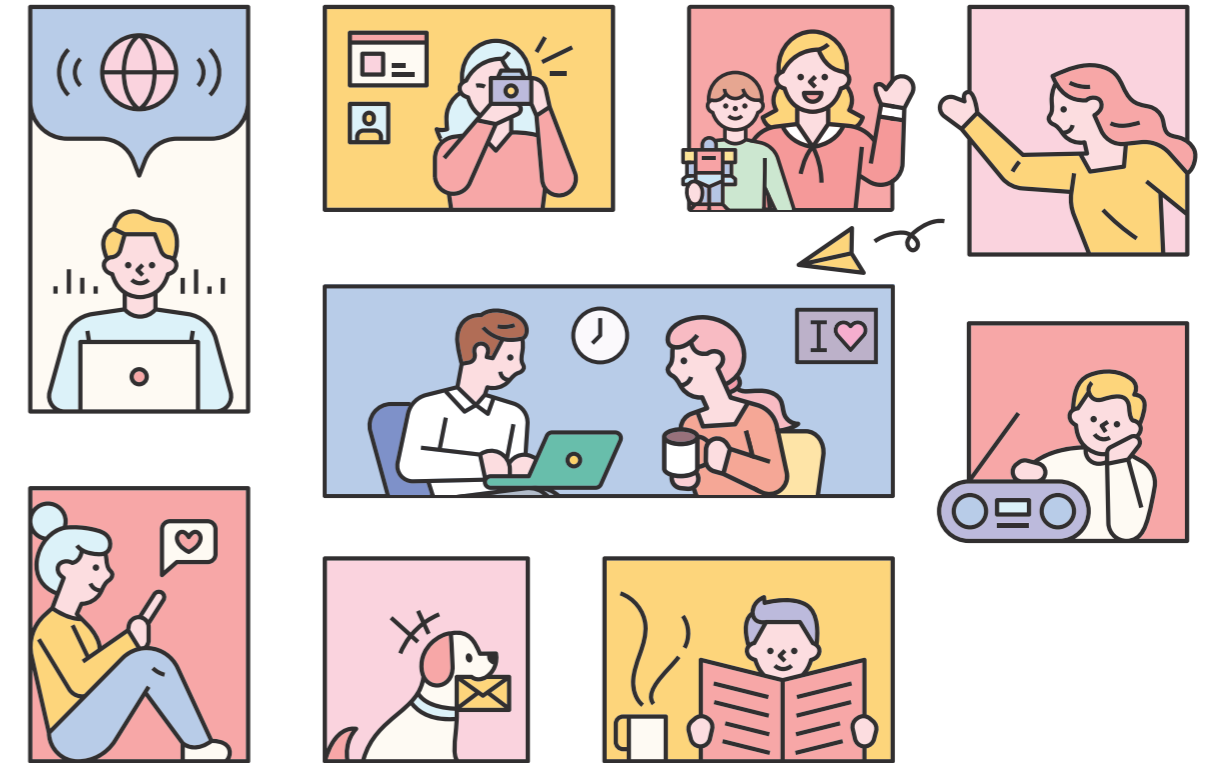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홈페이지: [www.lh.or.kr](http://www.lh.or.kr)  
 대표전화: 1600-1004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Y A N G J U H O E C H E O N A 1 7 B L



## 사이좋은 신혼집

양주의 첫 신혼희망타운, 덕계역 바로 앞에서 누리세요!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총 254세대 / 전용 55㎡ |

## Welcome to New Life Style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심의 편리함을 모두 누리는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CONTENTS

03

인트로

04

투시도

06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08

지구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10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

12

단위세대  
 평면도

20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22

주요마감재  
 설치내역

23

입주자모집공고

도시와 푸른 숲 사이  
 신혼부부의 꿈을 담은 집으로

초대합니다



덕계역 바로 앞,  
 편리한 출퇴근은 물론,  
 도보권 초중고교  
 중심상권의 편리함까지,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서  
 이웃과 자연과 함께 사이좋게 삽니다

1호선 덕계역  
초역세권

덕계천 수변공원  
힐링 산책코스

중심상업지구  
원스톱 생활인프라

도둔초 및 초중고교(예정) 등  
안심교육환경

부담을 낮춘 합리적 임대료로  
알뜰한 신혼생활

# 역과 숲사이, 학교와 공원사이, 사이좋은 신혼집

도시와 숲 사이, 아이의 웃음과 엄마의 행복사이,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 푸른 자연과 함께, 사이좋게 삽니다



※ 상기 이미지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물의 색채 및 외부 상세내역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 투시도상의 주출입구 앞 도로에 표시된 안전지대는 준공완료 후 입주인의 원활한 입출입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AL LOCATION

YANGJU HOECHEON A17BL

# 의정부 넘어 1호선 덕계역 바로 앞!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新주거타운

덕계역 초역세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 GTX-C노선(예정) 등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신주거타운, 양주 회천을 주목하세요



## Traffic Premium

**덕계역**

**1호선 덕계역 초역세권**  
1호선 덕계역, 덕정역 GTX-C노선(예정), 7호선 연장계획,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제2수도권순환도로(예정), 3번국도, 신평화로 등 출퇴근이 편안해지는 쾌속교통망



**편리한 물세권**  
덕계역 앞에 새롭게 조성되는 중심상권과 이마트(양주점), 양주패션복합단지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라이프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지역조감도는 향후 개발 후의 이미지이며, 해당기관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교통망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례	
단독주택	공원
아파트	녹지
주상복합용지	하천
근린생활시설	공공공지
상업용지	광장
복합용지	철도
업무용지	방음시설
도시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도로
공공청사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철도공사부지
주유소	유보지
종교시설	

**SPECIAL LOCATION**  
YANGJU HOECHEON A17BL

## 학교와 공원 사이, 역과 물 사이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신혼집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와 중심상권,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서 꿈꿔왔던 주거라이프가 펼쳐집니다



**도보통학 학세권**  
단지 인근 초·중·고교가 모여 있는 도보통학 학세권으로 등하교 안심은 물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를 실현, 아이키우기에 더 안전한 생활



**푸른자연 숲세권**  
탁 트인 불곡산 전망과 고장산 산림욕장, 덕계천 산책로, 덕계근린공원 등 자연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 상기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구조감도는 향후 개발 후의 이미지이며, 기반시설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AL LANDSCAPE

YANGJU HOECHEON A17BL

## 육아보육 특화로 더 편리하고 즐거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단지

육아보육을 위한 특화커뮤니티로 맞벌이부부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 운동을 즐기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함께 합니다



###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54세대(금회공급) 총 760세대 중 공공분양 506세대(기공급)

<b>55Aa</b>	<b>55AaS(주거약자용)</b>	<b>55Ab</b>	<b>55AbS(주거약자용)</b>	<b>55Ba</b>	<b>55Bb</b>
28세대	12세대	149세대	9세대	4세대	52세대



**선호도 높은 실속평형 공급 (55㎡)**  
신혼부부에게 선호도 높은 실속 평형 55㎡ 적용 및 다양한 수납공간과 과학적 공간설계로 개방감 극대화

**육아보육에 특화된 커뮤니티**  
공동육아방, 방과후돌봄, 어린이집 등 육아보육 커뮤니티 및 휴게마당,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 제공

※ 상기 단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1701동, 1707동, 1708동의 옥상과 1701동, 1707동 지하PT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상에 주출입구 앞, 도로에 표시된 안전지대는 준공완료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출입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 단지특화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 상에 주출입구 앞, 도로에 표시된 안전지대는 준공완료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출입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 상에 주거약자용 동호수는 별도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55.0000A 주택형

55Aa

28세대

55AaS

12세대(주거약자)

주택면적

전용면적	55.5300㎡
주거공용면적	23.9930㎡
기타공용면적	7.5524㎡
주차장면적	37.8000㎡
계약면적	124.8754㎡

실별면적

거실	11.11㎡
복도	3.77㎡
침실 1	10.36㎡
침실 2	4.65㎡
주방/식당	9.31㎡
알파룸	3.11㎡
드레스룸	2.43㎡
팬트리	1.22㎡
부부욕실	1.99㎡
공용욕실	3.45㎡
현관	4.13㎡

발코니면적

발코니계	27.91㎡
------	--------

※ 상기 발코니면적은 확장전 발코니면적의 합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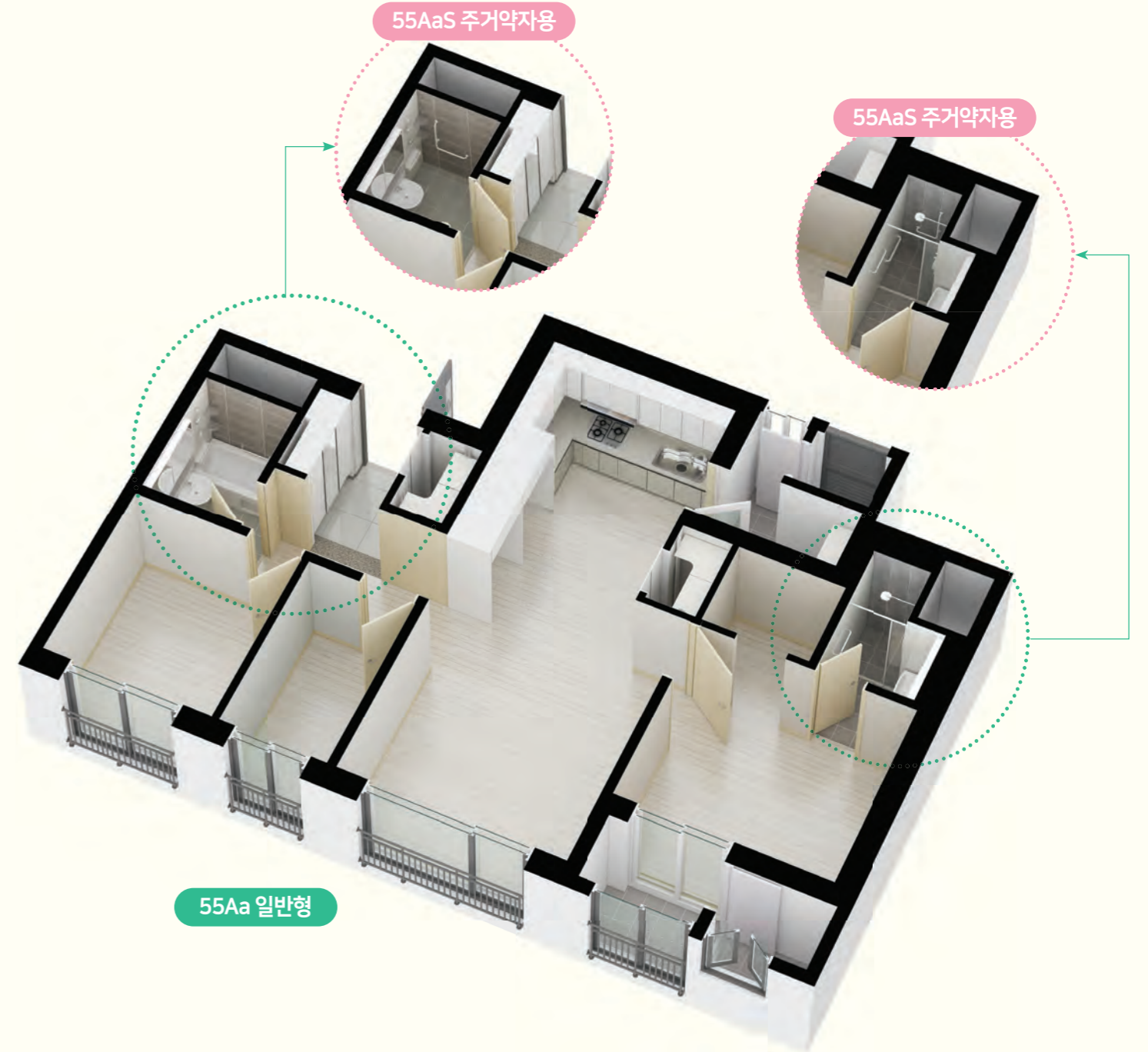
▲ 1층~2층 (대피공간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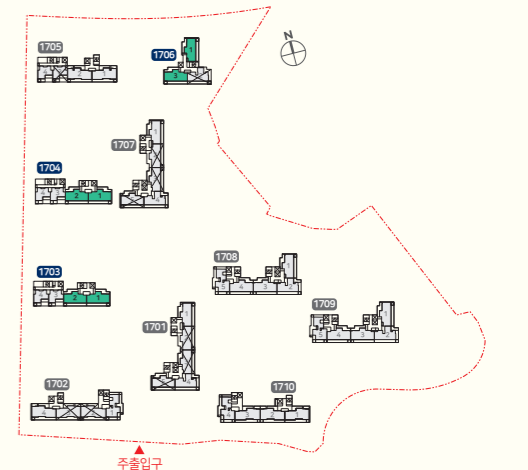
▲ 3층 (대피공간 미설치)

주거약자용 세대 편의시설

- ☑ 공용욕실 내 접이식 좌식의자
- ☑ 안전손잡이(현관, 좌변기, 샤워실)
- ☑ 야간센서등(욕실 앞)
- ☑ 바닥 단차 줄임(현관, 욕실)
- ☑ 비상콜
- ☑ 욕실문 개폐방향 밖 여닫이



55Aa 일반형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X0.3025=평)
- ※ 신발장 후면에 통신단자함으로 인해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기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기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 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55.0000A 주택형

55Ab

149세대

55AbS

9세대(주거약자)

주택면적

전용면적	55.7600㎡
주거공용면적	24.0924㎡
기타공용면적	7.5837㎡
주차장면적	37.9565㎡
계약면적	125.3926㎡

실별면적

거실	11.34㎡
복도	3.84㎡
침실 1	10.42㎡
침실 2	4.71㎡
주방/식당	9.13㎡
알파룸	3.19㎡
드레스룸	2.28㎡
팬트리	1.20㎡
부부욕실	1.99㎡
공용욕실	3.47㎡
현관	4.19㎡

발코니면적

발코니계	28.4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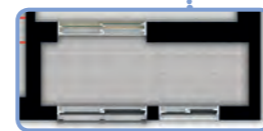
※ 상기 발코니면적은 확장전 발코니면적의 합계입니다.



55AbS 주거약자용



55AbS 주거약자용



▲ 1층~2층 (대피공간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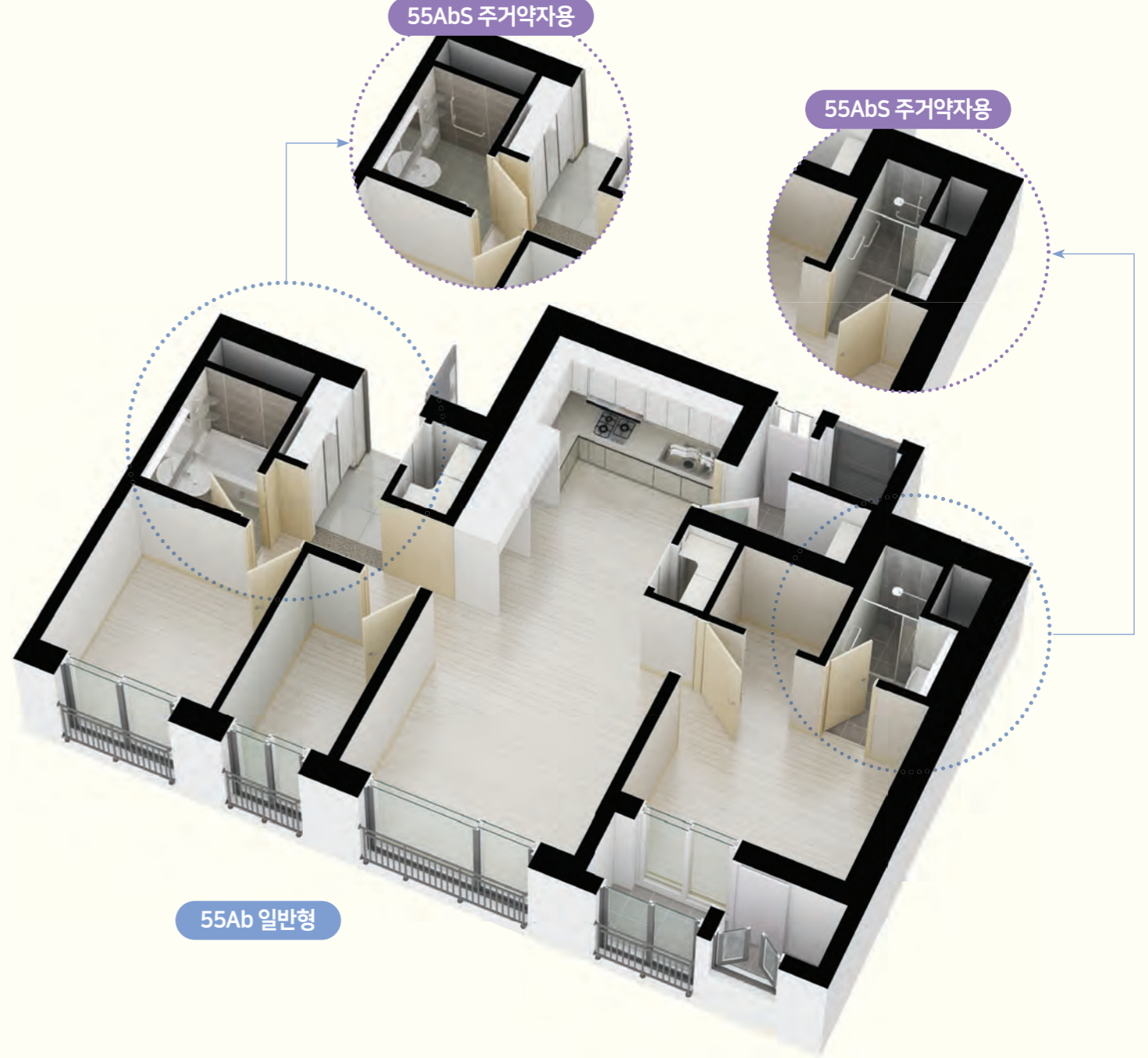
▲ 3층 (대피공간 미설치)

주거약자용 세대 편의시설

- ☑ 공용욕실 내 접이식 좌식의자
- ☑ 안전손잡이(현관, 좌변기, 샤워실)
- ☑ 야간센서등(욕실 앞)
- ☑ 바닥 단차 줄임(현관, 욕실)
- ☑ 비상클
- ☑ 욕실문 개폐방향 밖 여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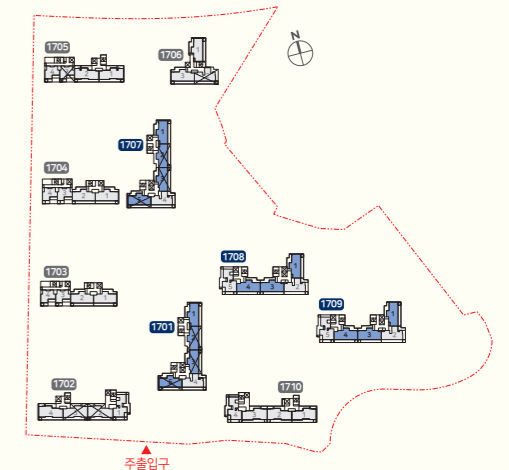
55AbS 주거약자용

55AbS 주거약자용



55Ab 일반형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X0.3025=평)  
 ※ 신발장 후면에 통신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기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기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 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5Ba

4세대

**주택면적**

전 용 면 적	55.8700㎡
주 거 공 용 면 적	24.1399㎡
기 타 공 용 면 적	7.5986㎡
주 차 장 면 적	38.0314㎡
계 약 면 적	125.6399㎡

**실별면적**

거 실	10.93㎡
복 도	3.74㎡
침 실 1	7.38㎡
침 실 2	4.65㎡
주 방 / 식 당	11.14㎡
알 파 룸	3.11㎡
부 부 욕 실	2.85㎡
공 용 욕 실	3.45㎡
현 관	3.75㎡
기 타	4.87㎡

**발코니면적**

발 코 니 계	26.6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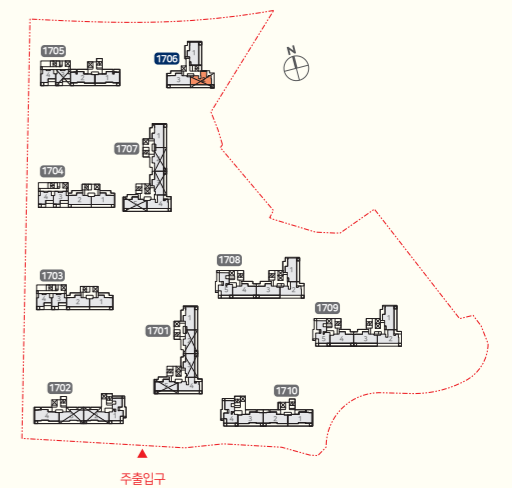
※ 상기 발코니면적은 확장전 발코니면적의 합계입니다.



▲ 1층~2층 (대피공간 미설치)



▲ 3층 (대피공간 미설치)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X0.3025=평)  
 ※ 신발장 후면에 통신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기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기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 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5Bb

52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55.9800㎡
주거공용면적	24.1875㎡
기타공용면적	7.6136㎡
주차장면적	38.1063㎡
계약면적	125.8874㎡

**실별면적**

거실	11.20㎡
복도	3.81㎡
침실 1	6.87㎡
침실 2	4.71㎡
주방 / 식당	11.05㎡
알파룸	3.18㎡
부부욕실	2.86㎡
공용욕실	3.47㎡
현관	3.75㎡
기타	5.08㎡

**발코니면적**

발코니계	27.2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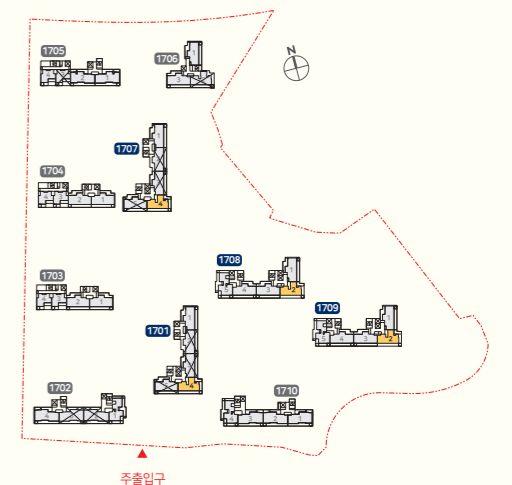
※ 상기 발코니면적은 확장전 발코니면적의 합계입니다.



▲ 1층~2층 (대피공간 미설치)



▲ 3층 (대피공간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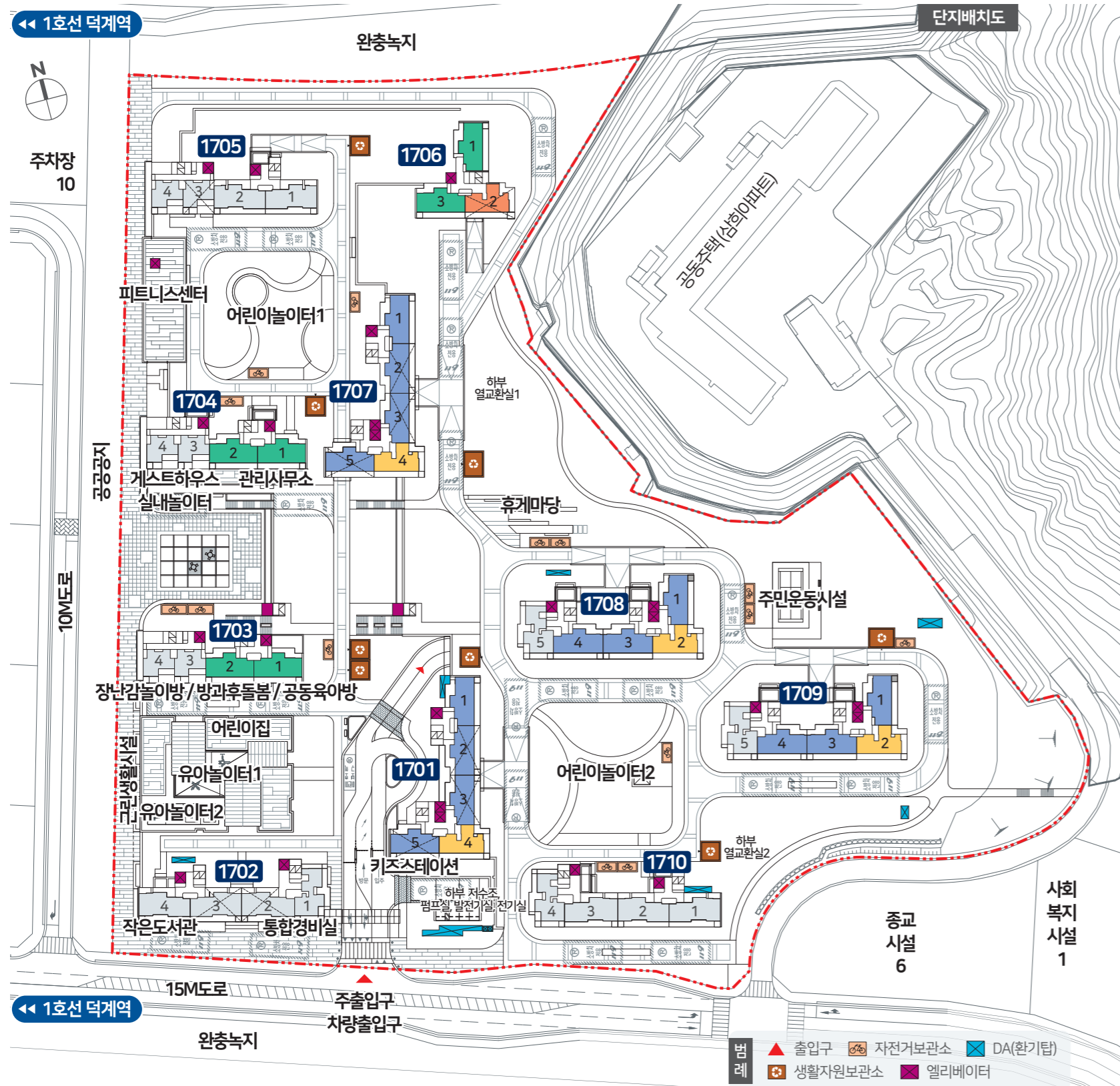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X0.3025=평)  
 ※ 신발장 후면에 통신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기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기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 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단지배치도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54세대(금회공급)  
 총 760세대 중 공공분양 506세대(기공급)

<b>55Aa</b> 28세대	<b>55AaS(주거약자용)</b> 12세대	<b>55Ab</b> 149세대	<b>55AbS(주거약자용)</b> 9세대	<b>55Ba</b> 4세대	<b>55Bb</b> 52세대
---------------------	-----------------------------	----------------------	----------------------------	--------------------	---------------------



## 동호배치도

27F	2703	2704	2705																		
26F	2603	2604	2605																		
25F	2503	2504	2505																		
24F	2403	2404	2405																		
23F	2303	2304	2305																		
22F	2203	2204	2205																		
21F	2101	2102	2103	2104	2105																
20F	2001	2002	2003	2004	2005																
19F	1901	1902	1903	1904	1905																
18F	1801	1802	1803	1804	1805																
17F	1701	1702	1703	1704	1705																
16F	1601	1602	1603	1604	1605																
15F	1501	1502	1503	1504	1505																
14F	1401	1402	1403	1404	1405																
13F	1301	1302	1303	1304	1305																
12F	1201	1202	1203	1204	1205																
11F	1101	1102	1103	1104	1105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9F	901	902	903	904	905																
8F	801	802	803	804	805																
7F	701	702	703	704	705																
6F	601	602	603	604	605																
5F	501	502	503	504	505																
4F	401	402	403	404	405																
3F	301	302	303	304	305																
2F	201	202	203	204	205																
1F	101	필로티	104	PIT																	
TYPE	55Ab	55Ab	55Ab	55Bb	55Ab																
	<b>1701동</b>					<b>1702동</b>				<b>1703동</b>				<b>1704동</b>				<b>1705동</b>			

27F	2703	2704	2705																	
26F	2603	2604	2605																	
25F	2503	2504	2505																	
24F	2403	2404	2405																	
23F	2303	2304	2305																	
22F	2203	2204	2205																	
21F	2103	2104	2105																	
20F	2003	2004	2005																	
19F	1903	1904	1905																	
18F	1802	1803	1801		1802	1803	1804	1805												
17F	1702	1703	1701		1702	1703	1704	1705												
16F	1602	1603	1601		1602	1603	1604	1605												
15F	1502	1503	1501		1502	1503	1504	1505												
14F	1402	1403	1401		1402	1403	1404	1405												
13F	1301	1302	1303	1304	1305															
12F	1201	1202	1203	1204	1205															
11F	1101	1102	1103	1104	1105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9F	901	902	903	904	905															
8F	801	802	803	804	805															
7F	701	702	703	704	705															
6F	601	602	603	604	605															
5F	501	502	503	504	505															
4F	401	402	403	404	405															
3F	301	302	303	304	305															
2F	201	202	203	204	205															
1F	101	필로티	103	102		103	104	105												
TYPE	55Aa	55Ba	55Aa	55Ab		55Bb	55Ab	55Ab	59Bb											
	<b>1706동</b>			<b>1707동</b>					<b>1708동</b>				<b>1709동</b>				<b>1710동</b>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 상에 주출입구 옆 도로에 표시된 안전지대는 준공완료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출입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 상에 주거약자용 동호수는 별도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동호배치도 상에 주거약자용 동호수는 별도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요마감재 설치내역

구분	품목	55㎡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바닥	플라싱타일급
	마루귀틀	엔지니아스톤급
	신발장	설치
거실/주방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바닥	기능성 롬카펫
	거실아트월	포셀린타일급
	주방벽	도기질타일
	팬트리	설치
	주방가구	문짝 상판
침실1	바닥	기능성 롬카펫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문틀/문짝	데코시트 (PVC)
침실2	바닥	기능성 롬카펫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문틀/문짝	데코시트 (PVC)
알파룸	바닥	기능성 롬카펫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문틀/문짝	데코시트 (PVC)
욕실	벽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천장	ABS판넬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 (공용배기방식)
	가스쿡탑	3구 (그릴미부착)
	음식물 탈수기	설치
	싱크수전	설치 (핸드터치식 절수기)
욕실설비	욕조 (공용욕실)	설치 (주거약자용 제외)
	욕조수전 (공용욕실)	선반형 (안마헤드)
	샤워수전 (샤워부스)	수납일체형 (안마 및 레인형헤드)
	양변기	원피스형
	세면기	설치
	비데	설치 (부부욕실)
	기타설비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비상호출버튼	설치 (부부욕실) / 주거약자용 (각실별, 공용욕실, 부부욕실)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침실1
실별온도조절기		설치
세대환기시스템		설치
조명설비	식탁등	다운라이트 (LED)
	실별조명등	LED
배선기구	생활정보기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설치
정보통신설비	월패드	설치 (10인칭)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 품귀 · 기타사유 등으로 시공여건 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양주회천 A17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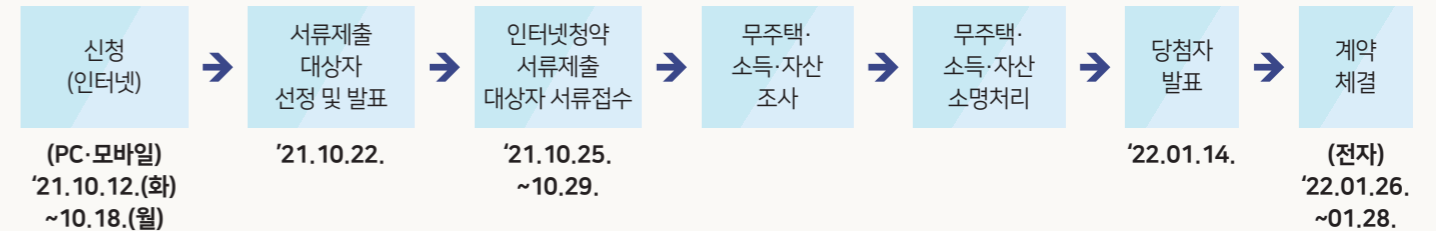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30.)

## 1 건설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54호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노력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양주회천 A17블록 행복주택(254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50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양주회천 A17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2014.10.0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2014.10.0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 현장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거주자(철거민)는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이 주택의 공급 관련된 내용은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lh-hc17.co.kr](http://www.lh-hc17.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양주회천 A17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1-000720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주택타입	건설 호수	발코니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55A	55Aa	28	확장	55.53	23.9930	7.5524	37.8000	124.8754	'22.12
	55Ab	149	확장	55.76	24.0924	7.5837	37.9565	125.3926	
55A2 (주거약자)	55AaS	12	확장	55.53	23.9930	7.5524	37.8000	124.8754	
	55AbS	9	확장	55.76	24.0924	7.5837	37.9565	125.3926	
55B	55Ba	4	확장	55.87	24.1399	7.5986	38.0314	125.6399	
	55Bb	52	확장	55.98	24.1875	7.6136	38.1063	125.8874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호수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	계약금	잔금					
55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83	83	70,800	3,540	67,260	300,900	(+)36,000	106,800	120,900	6~10
	기존거주자	8	-					(-)60,000	10,800	425,900	20
55A2 (주거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11	10	70,800	3,540	67,260	300,900	(+)36,000 (-)60,000	106,800 10,800	120,900 425,900	6~10
55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27	26	71,200	3,560	67,640	302,600	(+)36,000	107,200	122,600	6~10
	기존거주자	3	-					(-)60,000	11,200	427,600	20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양주회천 A17블록 행복주택(254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0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실시합니다.
- 55A 주택형은 건설호수 177호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3호를 제외한 174호를 공급하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2022.9월경)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기존거주자 공급예정물량(11호) 중 철거민의 미신청 또는 입주자격 미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공가가 있는 경우 동일한 공급형태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양주회천 A17BL 행복주택 전세대(254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작은방(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됩니다.
- 해당지구 바닥재는 '기능성 톱카펫'로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⑥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⑥를 모두 갖춘 자

- ①~④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④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2014. 10. 0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2014. 10. 0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맞벌이 부부는 461,252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명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양주시에 3년 이상 거주	양주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양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p>• <b>주거약자</b></p> <p>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p> <p>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p> <p>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p> <p>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p>
---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구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 양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3 기존거주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신청가능**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희망자 현황

구분	55A주택형	55A2주택형	55B주택형	계
기존거주자	8	-	3	11

• **기존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현장방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10.13(수) 10:00 ~ 16: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 LH 서울지역본부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 신청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별도 발송되는 안내문 참조(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구분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선공급 / 일반공급	<b>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b> '21.10.12.(화) 10:00 ~'21.10.18.(월) 17: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4시간 (토,일요일 포함)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1.10.22.(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b>등기우편으로만 접수</b> '21.10.25.(월) ~'10.29.(금) [등기우편 접수주소] (06100)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양주회천 행복주택" 담당자 앞 ※ '21.10.29. 소인분까지 유효	'22.01.14.(금) 17:00 이후 (장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b>전자계약만 가능</b> '22.01.26.(수)10:00 ~'01.28.(금)17:00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임대공급 운영부)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게시합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21.10.22.(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선정된 분은 아래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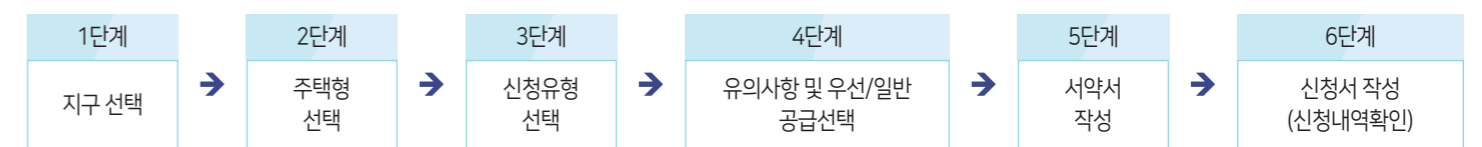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10.25.(월)~'21.10.29.(금)]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10.29.)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 발송주소)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양주회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1.10.12.(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1.10.18.(월) 오후 5시까지**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1.10.12.(화)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1.10.18.(월)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li> <li>*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li> <li>*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li>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신청자 포함)이 전자 서명 또는 날인</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양식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발급일자,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우선공급신청자/주거약자형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li> <li>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li> <li>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li> <li>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li> <li>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li> </ul>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1통

##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li> </ul>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양식4</li> <li>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제출 *양식4</li> <li>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li> <li>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주민센터
신혼 부부 계층	<p><b>[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li> <li>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li> </ul> <p><b>[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인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li> <li>-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ul> <p><b>[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li> </ul>	
재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신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li> <li>-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li> </ul>	주민센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7.10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li> <li>'12.7.10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li> </ul>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2.01.1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할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 전자(PC, 모바일)계약 [기간 : '22.01.26.(수) 10:00 ~ 01.28.(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시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전자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 현장방문 계약(기존거주자 및 미성년자에 한함) [일자 : '22.01.28.(금)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li> <li><b>*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b></li> <li>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배우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ul> </li> <li><b>· 배우자 외의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조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li> <li>-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li> </ul> </li> </ul>

\* 현장계약 장소는 현재 미정이며,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li> </ul>
총 자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li> <li>*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ul>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li> <li>-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li> <li>-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동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li> <li>-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li> </ul>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금융 자산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li> <li>-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li> <li>-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li> </ul>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 연금급여, 공무원퇴직 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li> </ul>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li> <li>- 직권조사 등록</li> </ul>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금융 자산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b>■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기존거주자(철거민)</td> <td>20년</td> </tr> </tbody> </table> <p><b>■ 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li> <li>-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li> <li>-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ul>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기존거주자(철거민)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기존거주자(철거민)	20년														
예비입주자	<p><b>■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갱신계약 등	<p><b>■ 갱신계약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ul> </li> <li>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li> </ul> <p><b>■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li> </ul>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b>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b></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b></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ul> </li> </ul>
지구 및 단지특성	<p><b>■ 지구 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li> <li>-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li> <li>-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li>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어 있고, GTX-C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구에서 직선거리 3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덕계역, 덕정역이 위치하고 있음</li> <li>- 지구 동측으로 고장산이 위치하고 있음</li> <li>- 지구 반경 500m 이내에 도둔초등학교, 중학교4(예정), 고등학교2(예정)가 위치하고 있음</li> <li>- 지구 동측으로 양주옥정지구, 남측으로 양주고읍지구, 북측으로 양주덕정지구가 위치하고 있음</li> <li>- 지구 북측으로 덕계천, 청담천이 위치하고 있음</li> <li>- 지구 북측 덕계천, 청담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li> <li>-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li> </ul> <p><b>■ 단지 외부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양주회천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 남측에는 공동주택용지(A18BL), 남동측 인접구역에 종교시설용지와 복합용지, 서측에는 일반상업용지가 계획되어 있음</li> <li>- 단지 북측 및 서측으로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가 연결하여 계획되어 있음</li> <li>-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공공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임</li> <li>- 단지 북동측이 기존 공동주택(삼희아파트)와 인접해 있으며, 인접경계에는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음</li> <li>- 단지 인근 일반상업용지의 상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빛발,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계역에서 발생하는 열차 소음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TV 채널 수신(OBS)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단지 외부에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항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p><b>■ 단지 내부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이 혼합 배치되어 있음</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양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어린이집은 단지 남측 주차입구 측면에 위치하며,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임</li> <li>- 단지 내 시설 중 일부는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li>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임</li> <li>- 본 단지 공공분양아파트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li> <li>-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 총 2개층 912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4대이며, 총 916대 중 30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함)으로 설계됨</li> <li>- 1701동 5호라인 지하 1층에 키즈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음</li> <li>- 1702동 1호라인 1층에 통합경비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4호 라인 1층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음</li> <li>- 1703동 1, 2, 3, 4호라인 1층에 통합보육센터(공동육아방, 방과후돌봄, 장난감놀이방)가 위치하고 있음</li> <li>- 1704동 1·2호라인 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704동 3·4호라인 1층에 게스트하우스가 2,3,4호라인 지하1층에 실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음</li> <li>- 단지 내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방창호 외부에 간간이 설치되어 있음</li> <li>-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li> <li>-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li> <li>-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장난감놀이방, 방과후교실, 공동육아방 등) 및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li> <li>-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li> <li>-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 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됨</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내상가 주변 지상주차장(4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li> <li>-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1층 혹은 지하 2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 시설물 등은 설치되지 않음</li> <li>- 계절창고는 단지여건상 지하에 동별 세대수비율과 관계없이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음</li> <li>-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거동에 인접하여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및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계단실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li> <li>-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장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임</li> <li>- 단지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울타리 및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li> <li>-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시설 내 냉·난방기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실외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동 전후면에 소방 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불가하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li> <li>-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기가 1701동, 1707동, 1708동의 옥상과 1701동, 1707동 PIT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 1701동·1710동 인근)</li> <li>-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동별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ul> <p><b>■ 마감재 및 발코니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li> <li>-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함</li> <li>-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음</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음</li> <li>- 불박이장류(웁선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미 없음</li> <li>-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li> <li>- 일부평형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이 상이함</li> <li>-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피공간(1~3층은 동일 위치)의 창호는 3층 이상은 안여닫이창,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됨</li> <li>-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li> <li>-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li> <li>-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아트월 부위는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 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li> <li>-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li> <li>-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li> <li>-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쿱탑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음</li> <li>-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li> <li>- 주방가구, 반침가구, 강화합판마루,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예정임</li> <li>-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li> <li>-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불가할 수 있음</li> <li>-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li> <li>- 세대 옥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음</li> <li>-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li> <li>-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 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해당 없음)</li> <li>-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재 없이 노출 시공됨</li> <li>-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주방 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댄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됨</li> <li>-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li> <li>- 발코니(세탁기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li> <li>-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정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정부 1개소에 설치됨</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함</li> <li>-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층에 1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li> <li>-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li> <li>-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됨</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li> <li>-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본전반은 신발장 옆 경량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 이동은 불가함</li> <li>-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됨(단, 실외기실은 벽부형 조명기구임)</li> <li>-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음</li> <li>-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li>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1705동 및 1708동은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li> <li>- 1707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li> </ul> <p>■ 학교 개교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교</th> <th>학교명</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초등학교</td> <td>덕계초</td> <td>평화로1489번길 29</td> </tr> <tr> <td>덕산초</td> <td>평화로1418-6</td> </tr> <tr> <td>도둔초</td> <td>고덕로 89-1</td> </tr> <tr> <td>중학교</td> <td>덕계중</td> <td>평화로1416번길 66-13</td> </tr> <tr> <td>고등학교</td> <td>덕계고</td> <td>평화로1489번길 34</td> </tr> </tbody> </table> <p>■ 개교 예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교</th> <th>위치</th> <th>학교명(가칭)</th> <th>개교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초등학교</td> <td>초1</td> <td>회천1초</td> <td rowspan="6">미정</td> </tr> <tr> <td>초2</td> <td>회천2초</td> </tr> <tr> <td>초3</td> <td>회천3초</td> </tr> <tr> <td>초4</td> <td>회천4초</td> </tr> <tr> <td>초6</td> <td>회천6초</td> </tr> <tr> <td>중학교</td> <td>중1</td> <td>회천1중</td> </tr> <tr> <td rowspan="3">고등학교</td> <td>중2</td> <td>회천2중</td> </tr> <tr> <td>중4</td> <td>회천4중</td> </tr> <tr> <td>고1</td> <td>회천1고</td> </tr> <tr> <td></td> <td>고2</td> <td>회천2고</td> <td></td> </tr> </tbody> </table> <p>※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p> <p>■ 일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li> <li>- 분양안내책자(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 또는 끝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li> <li>- 팜플릿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 등이 있을 수 있음</li> <li>-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li> <li>-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li> </ul>	학교	학교명	위치	초등학교	덕계초	평화로1489번길 29	덕산초	평화로1418-6	도둔초	고덕로 89-1	중학교	덕계중	평화로1416번길 66-13	고등학교	덕계고	평화로1489번길 34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1	회천1초	미정	초2	회천2초	초3	회천3초	초4	회천4초	초6	회천6초	중학교	중1	회천1중	고등학교	중2	회천2중	중4	회천4중	고1	회천1고		고2	회천2고	
학교	학교명	위치																																													
초등학교	덕계초	평화로1489번길 29																																													
	덕산초	평화로1418-6																																													
	도둔초	고덕로 89-1																																													
중학교	덕계중	평화로1416번길 66-13																																													
고등학교	덕계고	평화로1489번길 34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1	회천1초	미정																																												
	초2	회천2초																																													
	초3	회천3초																																													
	초4	회천4초																																													
	초6	회천6초																																													
	중학교	중1		회천1중																																											
고등학교	중2	회천2중																																													
	중4	회천4중																																													
	고1	회천1고																																													
	고2	회천2고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li> <li>-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li> <li>-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li> <li>-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li> <li>-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li> <li>-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li> <li>-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li> </ul> </li> <li>•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카redit,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발출자재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수자원 절약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지구온난화방지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금지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보행자도로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사회적 약자의 배려	단위세대	★	
	공용공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효율적인 건물관리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17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주식회사 한양 (110-81-14611) 태인종합건설주식회사 (124-81-76329)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441-81-2102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105-81-32709)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1-81-36564)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20-81-71530)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 주식회사 건일엠이씨 (131-81-65529)

##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 대상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 1, 2를 참고하시어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주방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아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장애정도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31-820-8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릿 배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 서울지역본부 마이홈센터(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층)</li> <li>•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층)</li> </ul>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li> <li>• 서울지역본부 통합상담실 : 02-3416-3887</li> <li>•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홈포털 (<a href="http://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a>)</li> <li>-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a href="http://blog.naver.com/happyhouse2u">http://blog.naver.com/happyhouse2u</a>)</li> <li>- LH 홈페이지 (<a href="http://www.lh.or.kr">http://www.lh.or.kr</a>)</li> </ul> </li> </ul>
사이버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lh-hc17.co.kr">www.lh-hc17.co.kr</a></li> <li>• 모바일 : <a href="http://www.lh-hc17.co.kr">www.lh-hc17.co.kr</a></li> </ul>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LH 청약센터(<a href="http://apply.lh.or.kr">http://apply.lh.or.kr</a>)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li> <li>•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li> </ul>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9.30

